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정보 유출·침해,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(3급 또는 4급 이하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8. 28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8. 7. ~ 8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광주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**한정한다**”)를 “**한정한다**) · 함평군 (월야면 소재 ‘빛그린 국가산업단지’에 한정한다)”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광주세관	전남광주 통합특별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· 서구 · 남구 · 북구 · 광산구 · 나주시 · 화순군 · 담양군 · 곡성군 · 장성군 · 영광군 · 무안군(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) · 함평군 (월야면 소재 ‘빛그린 국가산업단지’에 한정한다)
------	---------------	---

같은 표 목포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**목포시 · 함평군 · 신안군 · 영암군 · 진도군 · 해남군 · 강진군 · 장흥군 · 완도군 · 무안군**”을 “**목포시 · 함평군** (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) · **신안군 · 영암군 · 진도군 · 해남군 · 강진군 · 장흥군 · 완도군 · 무안군**”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목포세관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· 함평군(광주세관의 관할 구역은 제외한다) · 신안군 · 영암군 · 진도군 · 해남군 · 강진군 · 장흥군 · 완도군 · 무안군(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4 중 총계 “**372**”를 “**375**”로, 일반직 계 “**371**”을 “**374**”로,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**3**”을 “**4**”로,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**1**”을 “**3**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2 중 총계 “**380**”을 “**383**”으로, 일반직 계 “**379**”를 “**382**”로, 행정

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3”을 “4”로,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1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관할구역

[별표 1]

세관관서의 관할구역(제30조 관련)

[현행]

명칭	위치	관할구역
광주세관	전남광주 통합특별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광산구 · 나주시·화순군·담양군·곡성군·장성군·영광군 · 무안군(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)
목포세관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·함평군·신안군·영암군·진도 군·해남군·강진군·장흥군·완도군·무안군(광주세관의 관 할구역은 제외한다)

[개정안]

명칭	위치	관할구역
광주세관	전남광주 통합특별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광산구 · 나주시·화순군·담양군·곡성군·장성군·영광군 · 무안군(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)·함평군 (월야면 소재 ‘빛그린 국가산업단지’에 한정한다)
목포세관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·함평군(광주세관의 관할 구역은 제외한다)·신안군·영암군·진도군·해남군· 강진군·장흥군·완도군·무안군(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4]

관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372	375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371	374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3	4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	1	3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4의2]

관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380	383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379	382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3	4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	1	3	+2
•	•	•	
•	•	•	